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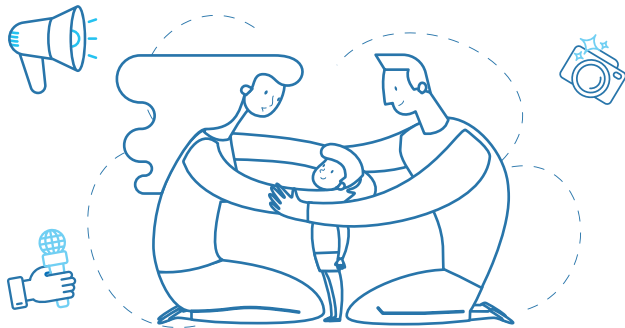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 5가지원칙

-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 아동학대 사건 취재 시, 언론이 준수해야 할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5
-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시, 언론이 지켜야 할 준칙을 지켜야 합니다. 6
-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7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8



잘못된 아동학대 사건 보도는 2차 피해를 냅니다.

최근 일련의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겪으면서 아동학대는 더이상 개인의 가정사가 아닌 사회문제(범죄)라는 국민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속한 인식개선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 관심 아래 심층적인 보도를 이어 온 ‘언론’이라는 숨은 공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언론은 아동학대 의제를 공론화하고 대중을 환기시키기 보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의 노출을 통해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편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아동의 생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관련자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 인권을 훼손하는 사례 등

잘못된 아동학대 사건 보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2차 피해를 끼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아동학대 사건 보도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책임감 있는 보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감춰져 있는 아동학대, 심각한 아동학대로 발전될 수 있는 위기 징후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툴(tool)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권고기준은 ‘아동학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언론보도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며, 신문과 방송, 인터넷신문 등 언론 미디어 뿐 아니라 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사회적 소통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신원공개 금지

피해아동 및 가족, 주변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은 아동학대의 특성상, 가해자에 대한 신원이 공개될 경우, 피해아동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 금지

사건과 관련 없는 아동의 사진이나 편지, 소지품과 같은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학대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노출하거나 자극적인 재연 금지

※ 관련 법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 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 사건 취재 시, 언론이 준수해야 할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 금지

언론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를 피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나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취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피해아동이 재학중인 학교나 주거지 등에서 기습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의 사례 발생

○ 피해아동의 주변인에 대한 인터뷰 자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친구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피해아동의 친구나 교사 등 주변인에 대한 인터뷰를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피해아동이 재학중인 학교나 기관을 찾아가 주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의 사례 발생

○ 신고자의 신변 보호

아동학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거나 신변을 위협하는 취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가 전근을 간 학교를 찾아내어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의 사례 발생

※ 관련 근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보호



-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 관련 법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시, 언론이 지켜야 할 준칙을 지켜야 합니다.

○ 학대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의 제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가급적 학대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재연, 학대 관련 사진이나 영상 노출 등을 피해야 합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구체적 장면의 노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사용 금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모의 아동학대 살인'과 같이 '계모'를 부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가족 유형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는 용어나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0.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 가족이 53.1%로 가장 높았고, 부자가정 14%, 모자가정 11.8%, 재혼가정 7.3% 순이었다.

○ 피해자나 가해자 위주의 아동학대 사건 지칭 금지

아동학대 사건을 지칭할 때, 피해자나 가해자 위주로 사건을 지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000군 학대살인사건', '000사건'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말하며 '인천아동학대사건', '평택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과 같이 표현하여 가급적 피해자나 가해자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표현을 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보호 

-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 피해자 및 관계 기관이 취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

피해자가 경찰이나 유관기관을 통해 기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담당 실무자가 사태수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 동안이라도 취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수사정보 노출은 위법행위임을 인지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5조, 제62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관계기관의 언론 대응시 한계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 측이 보도 삭제 및 수정 요청 시, 신속 대응 의무

피해자 측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 삭제 혹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도내용으로 인한 피해자 측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 단일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완료 후, 일회적 보도만 하는 것이 원칙

단일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완료 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보도를 지양하고, 일회적 보도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책임 혹은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방식의 기술 금지

피해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방식의 기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보도영역은 전문적인 취재 영역임을 인지

아동학대보도영역은 의료, 환경보도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취재영역이므로 아동에대한 지식, 심리학, 상담학에 대한 지식, 철저한 인권의식, 윤리의식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대처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소개하고 정확한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제공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징후가 무엇인지, 그러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노력의 필요성과 방법 제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로 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회적 차원의 개선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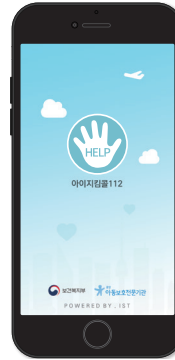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앱 아이지킴콜 112

● 아이지킴콜112 앱 소개

이지킴콜112는 아동학대 신고앱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점검해보고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이지킴콜112**를 검색하세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이지킴콜112 앱을 다운받으세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아이폰용



안드로이드폰용

○ 아동학대 바로알기

헷갈리는 아동학대 정보, 아이지킴콜112로 확인하세요.

아동학대 정의, 유형, 사례부터 관련 자료 및 영상을 바로 보고 잘 모를 땐 검색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아동학대 점검하기

내가 목격한 아동학대 상황, 아이지킴콜112로 점검하세요.

‘아동학대인 것 같다’ 의심될 때는 13개의 체크리스트로 아동학대 징후를 확인하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하기

아동학대 신고는 112 전화와 아이지킴콜112 앱을 통해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진행도 및 아동학대 통계 안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진행도



• 아동학대 통계 안내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자료실에 게시되어있는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go.kr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031-592-9818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02-2040-4242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031-402-0442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2-2247-1391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031-275-6177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02-3665-5183~5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031-316-1391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02-3157-1391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031-652-1391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02-842-0094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031-8009-0080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02-923-5440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033-244-1391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02-422-1391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3-644-1391
서울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02-474-1391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3-766-1391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02-974-1391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3-535-5391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051-791-1391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043-216-1391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1-715-1391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3-645-9078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1-711-1391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3-731-3685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1-791-1360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041-578-2655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3-422-1391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1-734-6640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3-623-1391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1-635-1106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3-710-1391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063-283-1391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32-434-1391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63-852-1391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515-1391	전라북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63-635-1391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061-753-5125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62-385-1391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061-285-1391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062-675-1391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061-332-1391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42-254-6790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4-745-1391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2-245-9382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4-853-1391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2-256-1391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4-284-1391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031-245-2448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4-455-1391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1-874-9100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055-244-1391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031-756-1391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5-757-1391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031-966-1391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5-322-1391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032-662-2580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064-712-1391~2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031-227-1310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064-732-1391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



보건복지부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